업무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, 2008.9.10, 2008고단2016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장성훈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길상 담당 변호사 민병덕

【주문】

】 피고인을 벌금 2,000,000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2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